

의안번호	제 64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10월 24일 (제368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8년 10월 24일

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64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18년 10월 24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징계의 종류 중「30일 이내의 출석정지」의 경우, 비회기(폐회)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,
-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와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징계의 효력(안 제93조제2항)
  - 징계의 종류 중 ‘30일 이내의 출석정지’ 의 경우 비회기(폐회)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
- 징계의 선포(안 제93조제3항)
  - 제2항 신설에 따른 기존 조항 변경(제2항 → 제3항)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(안 제93조제4항)
  - 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붙임

- 지방자치법,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○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징계의 종류 중 '30일 이내의 출석정지'의 경우 비회기(폐회) 기간을 제외한다.

제93조의제3항 현행 “제2항” 규정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93조의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3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(생략)	제93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신설)	② <u>징계의 종류 중 ‘30일 이내의 출석정지’의 경우 비회기(폐회) 기간을 제외 한다.</u>
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	③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.
④ (신설)	④ <u>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</u>

# 관계 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86조(징계의 사유)**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**제87조(징계의 요구)**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.

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.

**제88조(징계의 종류와 의결)**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2.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3.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4. 제명

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**제89조(징계에 관한 회의규칙)**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## □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

### 제9장 징계

**제89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**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 원(이하 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회원이 요구되지 아니하며,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.

**제90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**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,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 부터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.

② 제8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징계 대상자가

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9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징계가 회부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,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, 본회의 의결을 얻어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91조(의사의 비공개)**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92조(심문과 변명)**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3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**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중 일 때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.

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.

**제94조(시행규정)**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.